



붙임 1.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허가·신고 대상



[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 관련]

[변경 허가] -허가규모 시설에 한함-

1.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(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)하는 경우
 2. 법 제 15조에 따른 준공점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
 3.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
 4.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 5.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- ※ 위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시설의 **변경 전에** ‘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’ 를 제출하여야 함.

[변경 신고] -허가규모 시설에 한함-

1.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
 2.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
 3.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
 4.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(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(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)하는 경우)
 5.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 6.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
 - 나.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(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)하는 경우
 7.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
 8.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
- ※ 위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시설의 **변경 전에(1호~4호, 7호)** ‘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’ 를 제출하여야 함(단, **5호, 6호, 8호의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** 신고하여야 함).



붙임 1.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·지위승계 신고대상



[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7조, 제11조의3 관련]

[변경 신고] -신고규모 시설에 한함-

1.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**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**
2. 처리시설의 **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**(가축분뇨를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위탁처리로 변경**하는 경우,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(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)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3. **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**
4.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
 - 가. **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의 변경**
 - 나.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**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**(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)
5. 사육하는 **가축의 종류를 변경**하는 경우
6. **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**하는 경우

※ 위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시설의 **변경 전에(1호, 2호, 5호)** ‘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’ 를 제출하여야 함(단, **3호, 4호, 6호**의 경우 **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** 신고하여야 함).

[지위승계 신고] -허가·신고 규모 시설-

1. **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** 배출시설·처리시설을 **양도하거나 사망**한 경우
 2. **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**된 경우
- ※ 위의 승계사유가 발생되면 **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** ‘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신고서’ 를 제출하여야 함.

변경허가·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, 행정처분(경고 등)에 처할 수 있습니다.